

## 전형별 합격자 결정 및 동점자 처리기준

### □ 2차전형 합격자 【100점 만점 + (가점)】

- 2차전형 점수 + 가점 고득점순으로 2차전형 합격자를 선발
  - \* 가점은 유리한 하나만 적용 가능하며, 법률상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초과할 수 있음
  - \*\* 단, 가점사항이 여러 개로 법률상 가점과 중복 적용되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가점을 나중에 반영함

### □ 최종합격 예정자 【200점 만점 + (가점)】

- 2차전형 점수(100점) + 3차전형 점수(100점) + 가점 고득점 순
  - \* 법률상 가점을 부여할 경우 만점을 초과할 수 있음
  - \*\* 2차 전형 점수는 가점 포함 점수

#### 【 입사후보자 운영 】

- '20. 8. 3. 기준 최종합격 예정자가 입사하지 않는 경우, 미 입사자가 발생한 선발단위의 최종합격 예정자 결정 순위에 따른 차순위자를 3일 이내 추가 합격 조치 가능 \* 인사규정 채용세칙 제24조(후보자 운용)에 따름
- 단, 3차전형 만점의 80% 이상인 자에 한함

### □ 전형단계별 동점자 처리기준

- (2차전형 동점자) 법률상가점 → 특별가점(장애인만 해당) → 자격가점(전문자격) → 자격가점(법정선임 자격) → 기타가점
  - \* 위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
- (3차전형 동점자) 법률상가점 → 2차전형 점수
  - \* 위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
  - \*\* 2차 전형 점수는 가점 포함 점수

### □ 과락제 적용 기준

- (대상전형) 2차 필기전형, 3차 면접전형에 각각 적용
- (과락기준) 가점을 제외한 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경우에 불합격 처리
  - 2차 필기전형 : ①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경우, ② 직무능력평가 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경우  
(행정직렬의 직무능력평가 점수는 원점수, 표준점수 모두 40% 미만일 경우)
  - 3차 면접전형 : 전형 만점의 40% 미만인 경우

※ 모든 점수는 각 단계별 소수점 셋째짜리 이하 절사